

일련 번호	직 종 명	2017.6월 조사노임	2016.6월 조사노임	직 종 해 설
117	편 직 원	78,996	70,567	편직기를 사용하여 면장갑, 니트류 등을 짜는 사람
118	피 혁 가 공 원	76,412	74,634	가죽을 가공하거나 모피 또는 양모가 있는 원피를 처리하는 기계를 조작하는 사람
120	전 기 기 사	115,569	103,045	생산현장의 전기기기와 전기제어를 정비, 보수, 유지, 관리하는 전기기술자로서 관리·감독에 종사하는 사람(자격증 소지)
121	전 기 산 업 기 사	107,480	95,201	생산현장의 전기기기와 전기제어를 정비, 보수, 유지, 관리하는 전기기술자(자격증 소지)
122	전 기 기 능 사	97,959	86,394	전기기기를 수리 및 보조함으로써 전기기사를 보좌하는 사람(자격증 소지)
126	컴 퓨 터 운 용 사	-	-	컴퓨터 하드웨어 또는 소프트웨어 기술을 습득한 사람이거나, 시스템 사용자들에게 기술적인 지원 및 훈련을 시키고, 사용자들의 컴퓨터소프트웨어 및 하드웨어 문제를 조사하고 해결하는 사람
127	콘 크 리 트 제 품 성 형 기 조 작 원	85,853	82,527	콘크리트 제품을 생산하는 압축 진동성형기를 조작하고 부분적인 고장 등도 보수할 수 있는 사람
128	특 수 차 운 전 원	84,574	83,850	지게차, 레미콘, 트레일러 등 특수차량을 운전하는 사람
129	돌 분 쇄 원	80,831*	78,695*	착암기 등 기구를 사용하여 돌을 재단, 절단, 분쇄 및 연마하는 사람(석공도 이에 분류한다.)
131	소 성 원	73,574	71,863	성형된 제품을 소성로에서 굽는 작업을 하는 사람
133	폐 수 처 리 원	85,357	82,603	폐수정화기를 조작하거나 찌꺼기 등 오물을 처리하는 등 폐수 처리하는 사람
134	식 품 제 조 원	68,547	66,662	아이스크림, 양념육, 빵, 과자 등의 식품을 제조하는 사람
135	단 순 노 무 종 사 원	68,899	66,630	유리 이동하차, 목재선별분류, 각 생산라인의 단순작업, 식당 및 각종 현장의 경비원 등 단순작업 및 보조원으로 일하는 사람
136	작 업 반 장	96,656	94,029	단순노무종사원을 관리하는 반장, 생산공정 및 제조현장의 팀장 등 각 현장을 관리, 통솔하는 사람 또는 관리 책임자
137	안 전 관 리 사	109,480	108,666	작업자의 직업적 재해예방 및 작업환경의 개선 또는 안전을 위한 제반 사항을 관리 및 감독하는 사람
138	벨 트 컨 베 이 어 작 업 원	72,177	70,290	양 끝에 장치된 벨트 풀리 사이에 넓적한 이음매 없는 벨트를 구동시키면서 제품을 운반하는 기계에서 작업하는 사람
139	보 일 러 조 작 원	86,975	85,699	보일러를 조작하고 관리하며, 보일러의 작동상태와 배관상태를 점검하는 사람
전체평균		78,014	74,445	

주) '*' 표시는 조사업체가 5개 미만인 직종 '-' 표시는 조사가 안된 직종으로 유의하여 적용

국민연금법

[시행 2018.1.25.] [법률 제14921호, 2017.10.24., 일부개정]

보건복지부(국민연금정책과), 044-202-3601

- 제88조(연금보험료의 부과·징수 등)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국민연금사업 중 연금보험료의 징수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사항을 건강보험공단에 위탁한다. <신설 2009.5.21., 2011.6.7.>
- ② 공단은 국민연금사업에 드는 비용에 총당하기 위하여 가입자와 사용자에게 가입기간 동안 매월 연금보험료를 부과하고, 건강보험공단이 이를 징수한다. <개정 2009.5.21.>
- ③ 사업장가입자의 연금보험료 중 기여금은 사업장가입자 본인이, 부담금은 사용자가 각각 부담하되, 그 금액은 각각 기준소득월액의 1천분의 45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. <개정 2009.5.21.>
- ④ 지역가입자, 임의가입자 및 임의계속가입자의 연금보험료는 지역가입자, 임의가입자 또는 임의계속가입자 본인이 부담하되, 그 금액은 기준소득월액의 1천분의 90으로 한다. <개정 2009.5.21.>
- ⑤ 공단은 기준소득월액 정정 등의 사유로 당초 징수 결정한 금액을 다시 산정함으로써 연금보험료를 추가로 징수하여야 하는 경우 가입자 또는 사용자에게 그 추가되는 연금보험료를 나누어 내도록 할 수 있다. 이 경우 분할 납부 신청 대상, 분할 납부 방법 및 납부 기한 등 연금보험료의 분할 납부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 <신설 2011.6.7.>

[제목개정 2009.5.21.]

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

[시행 2018.1.23.] [대통령령 제28602호, 2018.1.23., 일부개정]

보건복지부(보험정책과), 044-202-2718

보건복지부(보험급여과-국민건강보험법 하위법령), 044-202-2731

보건복지부(보험급여과), 044-202-2745

제44조(보험료율 및 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) ① 법 제73조제1항에 따른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율은 **1만분의**

624로 한다. <개정 2012.12.27., 2013.9.26., 2014.11.20., 2015.12.22., 2017.12.29.>

② 법 제73조제3항에 따른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은 183.3원으로 한다. <개정 2012.12.27., 2013.9.26., 2014.11.20., 2015.12.22., 2017.12.29.>

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

[시행 2018.1.1.] [대통령령 제28496호, 2017.12.26., 일부개정] [전체조문보기](#)

제4조(장기요양보험료율)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장기요양보험료율은 1만분의 738로 한다. <개정
2008.12.31, 2009.12.30, 2017.12.26>

[본조신설 2008.6.11.]

[종전 제4조는 제6조로 이동 <2008.6.11.>]

「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」 제14조제3항 및 제4항, 제7항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 및 제12조의2에 따라 2018년도에 적용할 “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”과 “통상적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재해에 관한 산재보험료율”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

2017년 12월 29일

고용노동부장관

I. 2018년도 “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”과 “통상적 경로와 방법으로

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재해에 관한 산재보험료율”

1. 2018년도 “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”은 별지와 같다.
2. 2018년도 “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재해에 관한 산재보험료율”은 사업의 종류를 구분하지 아니하고 1.5/1,000로 한다.

II. 행정사항

1. 시행일
이 고시는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2. 유효기간
이 고시는 2018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.

사업종류	요율 (총퇴근재해 1.5% 포함)	사업종류	요율 (총퇴근재해 1.5% 포함)
1. 광업		3. 전기·가스·증기 및 수도사업	10.5
석탄광업 및 채석업	282.5	4. 건설업	40.5
석회석·금속비금속광업 및 기타광업	72.5	5. 운수·창고 및 통신업	
2. 제조업		철도·궤도·항공운수업	10.5
식품제조업	20.5	자동차운수업 및 택배업·퀵서비스업	21.5
섬유/섬유제품제조업(간)	14.5	수상운수업, 항만하역 및 화물취급사업	29.5
섬유/섬유제품제조(을)	21.5	운수관련 서비스업	10.5
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	43.5	창고업	14.5
펄프·지류제조업	25.5	통신업	12.5
출판·인쇄·재판 또는 인쇄물가공업	12.5	6. 임업	91.5
화학제품제조업	17.5	7. 어업	
크로스,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	12.5	어업 및 양식어업, 어업관련 서비스업	36.5
의약품·화장품·향료·담배제조업	9.5	8. 농업	26.5
고무제품 제조업	22.5	9. 기타의 사업	
유리 제조업	16.5	건물등의 종합관리사업	17.5
도자기·기타요양제품·시멘트제조업	27.5	위생 및 위생서비스업	31.5
기계기구·비금속광물제품·금속제품제조업 또는 금속가공업	20.5	기타의 각종사업	11.5
금속제련업	12.5	사업서비스업	10.5
도금업	18.5	전문기술서비스업	8.5
전기·기계기구·전자제품·계량기·광학기계·기타 정밀기구 제조업	8.5	보건 및 사회복지사업	8.5
선박 건조 및 수리업	27.5	교육서비스업	8.5
수송용기계기구 제조업·자동차 및 모타사이클 수리업	17.5	도소매 및 소비재용품수리업	10.5
수제품 제조업	16.5	부동산업 및 임대업	9.5
기타제조업	28.5	오락·문화 및 운동관련 사업	11.5
		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사업	10.5
		0. 금융 및 보험업	8.5
		* 해인파견자: 16/1,000	
		(총퇴근재해 산재보험료를 포함: 17.5/1,000)	

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(약칭: 고용산재 보험료징수법 시행령)

[시행 2018.1.1.] [대통령령 제28505호, 2017.12.26., 일부개정]

고용노동부(고용보험기획과), 044-202-7351

고용노동부(산재보상정책과), 044-202-7712

제12조(고용보험료율) ①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고용보험료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. <개정 2011.3.30.,
2013.6.28.>

1. 고용안정·직업능력개발사업의 보험료율: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보험료율

가. 상시근로자수가 150명 미만인 사업주의 사업: 1만분의 25

나. 상시근로자수가 150명 이상인 사업주의 사업으로서 「고용보험법 시행령」 제12조에 따른 우선지
원 대상기업의 범위에 해당하는 사업: 1만분의 45

다. 상시근로자수가 150명 이상 1천명 미만인 사업주의 사업으로서 나목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: 1만분
의 65

라. 상시근로자수가 1천명 이상인 사업주의 사업으로서 나목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 및 국가·지방자치
단체가 직접 하는 사업: 1만분의 85

2. 실업급여의 보험료율: 1천분의 13

② 제1항제1호를 적용할 때 상시근로자수는 해당 사업주가 하는 국내의 모든 사업의 상시근로자수를 합
산한 수로 한다. 다만, 「공동주택관리법」 제2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사업의
경우에는 각 사업별로 상시근로자수를 산정한다. <개정 2016.8.11.>

③ 제1항제1호를 적용할 때 법 제9조제1항 단서에 따라 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주가 되는 하수급인에게는
원수급인에게 적용하는 고용안정·직업능력개발사업의 보험료율을 적용한다. 다만, 법 제8조에 따라 일
괄적용을 받게 되는 사업주의 개별 사업에 대해 법 제9조제1항 단서에 따라 하수급인을 법의 적용을 받
는 사업주로 보는 경우에는 그 하수급인인 사업주에게 적용하는 고용안정·직업능력개발사업의 보험료
율을 적용한다.

④ 제1항제1호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보험연도 중에 사업이 양도되거나 사업주가 합병된 경우 그 양도
또는 합병된 사업에 대해서는 해당 보험연도에 한정하여 양도 또는 합병 전에 적용된 고용안정·직업능
력개발사업의 보험료율을 적용한다.

[전문개정 2010.9.29.]



임금채권보장기금 사업주 부담금비율

[시행 2016.1.1.] [고용노동부고시 제2015-95호, 2015.12.28., 일부개정]

고용노동부(퇴직연금복지과), 044-202-7564

I. 임금채권보장기금 사업주 부담금비율

보수총액의 1000분의 0.6(전업종 공통)

II. 행정사항

1. 시행일

이 고시는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2. 재검토기한(3년)

이 고시는 「훈령·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」(대통령훈령 제248호)에 따라 발령 후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2018년 12월 31일까지 폐지 또는 개정한다.